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부세 교부 주기 개정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21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교부세 개요	2
2. 개정안 검토	3
(1) 지방교부세 교부주기 개정	3
(2)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대상사업 제한 및 대상사업 외 사용시 반환·상계 근거 신설	6
(3)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11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
3.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교부세 개요

지방교부세란 현행법 제2조제1호1)상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재정력 편차를 보전해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환임.

지방교부세는 현행법²⁾에 따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구분]

구분		목적	재원
보통교부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내국세 정률분 ^{주)} 의 97%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지연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40%
	재난안전관리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수요 대응	내국세 정률분의 3% × 50%
	국가지방협력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지방 협력 사업 촉진	내국세 정률분의 3% × 10%
부동산교부세		지방세(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한 후의 지방재원 감소 보전	종합부동산세의 100%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리 강화 및 시설 확충 수요 대응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주) 내국세 정률분: 내국세에서 담배개별소비세 45% 및 종합부동산세·목적세를 제외한 것의 19.2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2. 개정안 검토

(1) 지방교부세 교부주기 개정

개정안은 현행법상 연 4회로 나누어 교부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에 대하여, 해당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시 ① 보통교부세는 매월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부동산교부세는 4회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단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u>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u>	제10조(교부 시기) ----- ----- . <u>다만, 보통교부세는 매월 교부할 수 있고,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4회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지방교부세 교부주기는 “연 4회(매분기)”이며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만 “수시 교부”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 중 소방안전교부세·특별교부세는 현행법상 교부주기가 준수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는 “연 12회(매월)”, 부동산교부세는 “연 2회(7월·12월)” 교부되고 있어 현행법상 교부주기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부주기를 실무상 교부주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별 교부주기]

구분	현행		개정안
	현행법상 교부주기	실무상 교부주기	
보통교부세	연 4회(매분기)	연 12회(매월)	연 4회(매분기) ※ 연 12회(매월) 교부 가능
특별교부세	연 4회(매분기) ※ 수시 교부 가능	수시 교부	연 4회(매분기) ※ 수시 교부 가능
부동산교부세	연 4회(매분기)	연 2회(7월·12월)	연 4회(매분기) ※ 연 4회 미만 교부 가능
소방안전교부세	연 4회(매분기)	연 4회(매분기)	연 4회(매분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및 각 연도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지출부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현행법과 행정실무가 불일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무상 관행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의 경우에는 실무상 교부주기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보통교부세는 그 재원인 내국세의 수납액이 연중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납액 실적을 확인한 후 각 회차의 교부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를 현행법에 따라 분기 단위로 교부하면 3개월분을 각 분기의 마지막 달(3월·6월·9월·12월)에 한꺼번에 교부하게 되어, 월별로 교부하는 것보다 지연 교부되는 효과가 발생함.

참고로, 지방교부세의 교부주기는 1951년 4월 도입된 임시지방분여세 시기부터 “연 4회”³⁾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는 상기 이유 등을 고려하여 과거부터 보통교부세를 월별로 교부하였음.⁴⁾

3) 「법률 제192호 임시지방분여세법(1951.4.1.제정 및 시행)」

제6조 분여세는 연 4회에 나누어 교부한다.

둘째, 부동산교부세는 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6월 15일과 12월 1~15일⁵⁾에 연 2회 납부되고 부동산교부세도 그 직후인 7월·12월에 교부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연 4회 교부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

다만, 개정안은 모든 유형의 지방교부세 교부주기를 연 4회로 하는 현행법상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별 지방교부세 유형마다 교부주기상 특례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4개 지방교부세 유형 중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재난안전관리 등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교부세는 전술하였듯이 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연 2회 납부되고 있어 각각 구조적으로 수시 교부, 연 2회 교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는 원칙적 교부주기 자체를 각각 수시 교부, 연 2회 교부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소 2007년부터 월별로 교부한 내역이 등록문서로 확인 가능한 상황임.

5)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원칙적으로 12월 1일~15일이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6월에도 상당액이 납부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대상사업 제한 및 대상사업 외 사용시 반환·상계 근거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안 제9조의4제3항 신설),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반환 명령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u><신 설></u>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세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⑤ ----- 제4항----- ----- -----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6)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대상사업을 소방 인력 운영,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로 제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령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⁷⁾은 소방안전교부세를 해당 사용 대상사업

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7)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제9조 관련)

3. 2024년도 이후에 교부하는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begin{aligned}
 & \left\{ \frac{\text{해당 시·도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sum \text{시·도별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times 12\%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화재위험지수}}{\sum \text{시·도별 화재위험지수}} \times 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출동 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출동 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sum \text{시·도별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times 5\%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공무원 수}}{\sum \text{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지수}}{\sum \text{시·도별 지방도로 지수}} \times 6\%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하천 지수}}{\sum \text{시·도별 지방하천 지수}}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소요 지수}}{\sum \text{시·도별 안전소요 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지수}}{\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지수}} \times 2\%
 \end{aligned}$$

외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대상사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②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 대상사업 외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연도 교부액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동시에, 현행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환 명령도 법률에 함께 신설하고 있음.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대상사업 관련 개정내용 요약]

구분		현 행	개 정 안
사용 대상사업 제한		시행령 규정	법률 위임 → 시행령 규정
대상사업 외 사용시	반환 명령	-	법률에 신설
	상계 처리	시행규칙 규정	법률로 상향

$$\begin{aligned}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특수수요 소요 금액}}{\text{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교부 총액}} - \frac{\sum \text{시·도별 특수수요 소요 금액}}{\text{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도 수}} \right) \} \\
 & + \left(\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재정 확대 노력지수} \times 13\%}{\text{해당 시·도의 소방정책수행 노력지수} \times 2\%} \right.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육 확산 노력지수} \times 3\%}{\text{해당 시·도의 화재예방지수} \times 3\%}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times 4\%}{\sum \text{시·도별 안전시설 확충 노력지수} \times 4\%}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 \times 1\%}{\text{해당 시·도의 안전소요 지수 개선지수} \times 1\%}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안전투자 확보 지수} \times 2\%}{\text{해당 시·도의 안전신고 개선지수} \times 1\%} \\
 & + \frac{\sum \text{시·도별 안전신고 개선지수} \times 2\%}{\text{예산집행 노력지수} \times 2\%} \\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times 8\%}{\sum \text{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 지수} \times 8\%} \left. \right) \\
 & + \left(\frac{(1 - \text{해당 시·도의 재정자주도})}{\sum (1 - \text{시·도별 재정자주도})} \times 20\% \right) \\
 & - \text{해당 시·도의 대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end{aligned}$$

지방교부세는 제도의 취지상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⁸⁾ 이에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용도 제한 및 위반시 정부가 반환 명령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⁹⁾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안전교부세 또한 동일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연평균 77건, 73억 9,700만원의 대상사업 외 사용이 적발되어 전수 상계 처리되었음.

[2020~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외 사용 적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적발		조치			
			반환 명령		상계 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100	16,229	-	-	100	16,229
2021	101	9,098	-	-	101	9,098
2022	52	2,037	-	-	52	2,037
2023	55	2,223	-	-	55	2,223
평균	77	7,397	-	-	77	7,397

자료: 행정안전부

8)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통합 재정자주도 산정시 국고보조금은 “실질적인 자주재원”에서 제외되지만 지방교부세는 이에 포함되고 있음.

9)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3)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교부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세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교부세 관련 자료·정보의 전산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관련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관련 자료·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2020년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음. 개정안은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사후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일반적으로 정부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등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능이 포함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사후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그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면 향후 시스템 운영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상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현황]

제명	조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보급·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시공 및 붕괴위험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명	조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 11.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9조(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명	조문
「전자정부법」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의4(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명	조문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 의 처
02)6788-5333